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93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9-1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서울특별시 장

1. 대상지

가. 명 칭 : 성내동 19-1번지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가칭)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9-1번지 외 130필지

다. 면 적 : 21,612.9㎡

2. 권리산정기준일 : 2021. 2. 19.

3.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 증가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건축물의 신축,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등의 행위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하고자 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02-2133-8318) 또는 강동구 도시계획과(☎02-3425-88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고시는 강동구 성내동 19-1번지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관계도면

